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” 시행령 상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“5년”을 “8”년으로 변경하고, 교통신기술의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범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교통신기술 개발비용과 활용금액을 고려한 교통신기술 회수기간을 분석한 결과 약 14.1년*이 소요됨에 따라 현행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12년(최초 5년, 연장 7년)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(안 제100조 제1항 개정)

* 교통신기술 52건의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

나. 교통신기술에 대한 활용실적을 교통관련 기관 등에 위탁함에 따라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*결과를 개발자 등에게 제공하여 교통신기술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(안 제114조의 2 제5항 제5호 신설)

* 연도별 활용추이 및 증감 원인분석, 향후 시장수요 및 활용 전망 등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0조제1항 중 “5년”을 “8년”으로 한다.

제114조의2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0조(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) ①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은 교통신기술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<u>5년</u> 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.	제100조(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8년</u> ----- ----- 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14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~ ④ (생 략)	제114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교통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06